

# 공유재산(카페) 설치·운영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수원시 광고호수공원 원천호수 나루터카페 운영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카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인의 카페 운영은 카페시설에 한정한다.
2. 카페 내에는 허가된 이외의 다른 종류의 시설물 설치나 물품을 일절 적치할 수 없다.
3.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수도,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이외에 필요한 모든 기기 및 설비의 설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카페 내·외부 사인물은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사전 협의 후 사용인이 설치한다.

제3조(판매물품 및 가격)

1. 사용인은 카페의 판매 물품 및 가격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제시한 물품 및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시중의 소매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물가인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품의 종류와 가격을 변동 시에는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가 판매물품의 종류 및 가격을 제한하여 사용인이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행하였을지라도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4. 사용인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는 즉시 판매할 물품의 종류, 판매 예정가격, 제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승인된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치하며 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변상 책임을 진다.

① 위반회수 1회 : 시정 및 주의

- ② 위반회수 2회 : 경고
- ③ 위반회수 3회 : 영업정지 10일
- ④ 위반회수 4회 : 사용허가 취소

**제4조(위생 및 청결문제)** 사용인은 위생 및 청결관련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인은 항상 이용자의 보건을 위하여 카페 내부를 상시로 청소하고, 카페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인이 자기 부담으로 처리한다.
2. 사용인이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용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 의무를 진다.
3. 사용인은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사용인은 카페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소란 및 기타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담)** 사용인은 전기요금 등 제반 공공요금을 부담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용료 일체는 사용인이 부담하며 계량기(모자분리)는 별도로 공사 설치하도록 한다.
2. 상하수도 사용료 일체는 사용인이 부담하며 계량기(수원시 수도)는 별도로 공사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 쓰레기 처리 비용 및 기타 유지비용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한다.
4. 상기 사항 이외의 각종 부과금 등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담한다.

**제6조(도난 및 손괴방지)** 카페 내의 시설과 물품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인은 자기부담의 보호시설을 갖추며 도난 및 손괴에 대한 책임은 사용인이 모두 진다.

**제7조(운영책임)**

1. 사용인은 카페 운영을 직접 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인에게 있다.
2.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공사, 행사 등)로 인하여 카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용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사용인은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광고호수공원 내의 환경에 저해가 되는 가설물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5. 카페 내부 및 주위 환경이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일시정지)**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일시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인으로 인하여 수원시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이용객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2. 운영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시정사항과 관련하여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시정 조치에 대한 서면경고 2회 후에도 시정되지 않았을 때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1. 사용인이 지정기한 내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허가를 취소하고 이행(계약)보증금은 수원시에 귀속되며, 관련 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를 받는다.
2.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조건> 제10조 1항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사용료는 1차 년도는 유효한 입찰 낙찰금액으로 하며, 2차 년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한다.

**제10조(인허가 사항)** 사용인은 건실하고 합리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영업개시일 이전에 카페 운영 업무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영업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 사본을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관리 및 원상복구)** 사용인은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있

어 선량한 사용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 훼손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종료 시의 재산 반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종료와 동시에 일체의 시설물이 원상태로 반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 재산 및 부대시설의 자진 철거 등)**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포기, 허가기간 만료, 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 중단 시에는 사용인의 장비, 시설 등은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는 임의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인은 손실이 발생하여도 일체의 권리나 보상요구를 청구할 수 없다.

#### **제14조 (인계인수)**

1. 사용인은 사업운영 시작 전 운영에 따른 제반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허가 만료될 때에는 만료일전까지 운영에 따른 인수인계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신규 계약자는 물품에 대하여 전 사용자와 협의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에 대하여 수원시는 관여하지 않으며 인수인계에 있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 한다.

**제15조 (사용료 등 체납시 재산 및 소득 등 조회)** 사용자가 사용료와 각종 부과금 및 기타 공제 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경우 사용자의 재산 및 소득 등 조회에 조건 없이 동의해야 하며, 수원시가 채권 압류 처분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허가를 득한 이후 자신의 경비로 적절한 장소에 공유재산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사용자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 (안내문 부착)** 사용인은 공원 이용객들이 쉽게 사용하도록 제반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기타)

1. 사용인은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운영여건 변경사항 발생에 대하여는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카페 운영은 09:00 ~ 22:00 이내로 한다. 단, 사전에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카페 명칭이나 상호는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제시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변경하거나 추가 문구를 넣을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자는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5. 사용인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수원시 또는 다음 사용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
6.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카페 판매 허가 물품 및 가격(안)

| 구 분 | 종 류             | 판 매 가 격(원) | 비 고   |
|-----|-----------------|------------|---|
| 카페  | 커피류             | 5,000 이하   | 종류별 가격은 다를 수 있으며,<br>부가서비스를 포함한 금액임.<br>※주류 판매 금지 |
|     | 차 류             | 5,000 이하   |   |
|     | 기타 음료           | 5,000 이하   |   |
|     | 아이스크림 류         | 5,000 이하   |   |
|     | 케익, 빵<br>샌드위치 등 | 5,000 이하   |   |

※ 상기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하여 가격 결정해야 함